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1389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12.15	홈페이지 주소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9	주소	phd8511@naver.com

진리국밥 정보공개서

㈜진리에프엔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진리에프엔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 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 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가맹본부의 대표	-
사무소의 소재지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팩스번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1661-915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661-9156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기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 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진리국밥 외 2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진리에프엔비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12. 26	2025. 1. 2	박형동	1661-9156	-
	법인등록번호	130111-12	220853	사업자등록번호	442-86-0352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박형	박형동	박형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대표이사	㈜진리에프엔비	진리국밥 외 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형동	1661-9156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김미현	진리국밥 외 2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전체(복남프라자)	503호, 504호	
사내이사	㈜진리에프엔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리에프엔미		" '	"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진리에프엔비	진리국밥 외 2개	2025.01.3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박형동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진리국밥	
상 호	진리국밥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진리국밥	상표 출원번호: 4020220055541 자세한 내용은 I-9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진리국밥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사업자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		
2024년				해당없음		

당사는 2024.12.26.에 법인이 설립되고, 2025.01.02.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리에프엔비의 2024년 이전 재무현황이 없습니다.

② 개인사업자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546	4,117	1,429	252,568	19,193	19,193
2022년	130,589	65,478	65,110	1,423,351	54,365	54,407
2023년	126,947	12,551	114,396	1,870,410	-75,885	-75,885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의 재무현황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당사가 2024.12.26.에 법인설립되고, 2025.01.02.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이전 재무자료가 없어서, 이전 년도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타선표	시크	# TIO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박형농	대표	2025.01 ~현재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대표	2021. 01 ~2025.01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미현	사내이사	2025. 01~현재	이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저	임원	수(명)	지의스/며\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1	1	-	

당사는 2024.12.26.에 법인이 설립되고, 2025.01.02.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리에프엔비의 2024년 이전 신고한 직원수는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가맹사업 경영	2025. 01.~현재	진리옥(등록번호: 20211522)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가맹사업 경영	2025. 01.~현재	한돈제육대감(등록번호:20211 52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가맹사업 경영	2025. 01.~현재	진리국밥(등록번호:20221389)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	----------------	-----------------------------



기 구 밥 진 리 국 밥 □ ⁴⁷⁸⁷⁸⁸⁸⁸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일 2022.03.25	출원번호 4020220055541	박형동	출원 중
---	--	-------------------	-----------------------	-----	------

- -당사는 위 상표권에 대하여 권리자로부터 사용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중으로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경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진리국밥]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3. 01. 02(이전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 1. 2)(이전 가맹본부 현황입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푸드챔피언	지기그바	바취드	2022.04 2025.0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1길 3, 401호
진리에프엔비	진리국밥	박형동	2023.01.~2025.0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진리에프엔비	진리국밥	박형동	2025.01.~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503호, 504호 전체(복남프라자)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TI TH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진리국밥	한식	국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진리국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9	8	1	25	24	1
서울	-	-	-	_	_	-	1	1	-

부산	-	-	-	-	_	_	_	_	-
대구	-	-	-	-	_	_	_	_	-
인천	-	-	-	_	_	_	_	_	_
광주	-	-	-	_	_	_	_	_	_
대전	-	-	_	2	2	_	5	5	_
울산	-	-	-	-	_	_	_	_	_
세종	-	-	-	-	_	_	2	2	_
경기	-	-	-	5	4	1	11	10	1
강원	-	-	-	-	_	_	2	2	_
충북	-	-	-	-	_	_	_	_	_
충남	-	-	-	-	_	_	_	_	-
전북	-	-	-	-	-	_	1	1	-
전남	-	-	-	2	2	-	3	3	-
경북	-	-	-	-	_	-	_	_	-
경남	-	-	-	_	_	-	_	_	-
제주	-	-	-	-	_	_	_	_	-
	이어 지크는 이저 기메보다이 지크로 기보고 취업스트리								

- 위의 자료는 이전 가맹본부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5.01.31.에 진리에프앤비로부터 가맹본부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하여 가맹점을 영업표지 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가맹본부가 진리옥으로 기재한 2023년말 이전 가맹점 20개점 모두를 실제 현실에 맞게 2024년부터는 진리국밥으로 전환(轉換)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024년 진리옥으로 신규 계약한 2개의 매장은 진리옥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재는 이에 맞춰서 작성되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진리국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8	-	-	-	8
2024	8	21	2	3	3	24

- 위의 자료는 이전 가맹본부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 위 기재 사항은 이전 가맹본부의 자료현황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전 가맹본부가 진리옥으로 기재한 2023년말 이전 가맹점 20개점 모두를 실제 현실에 맞게 2024년부터는 진리국밥으로 전환(轉換)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기재 과 정에서 2023년만 진리옥 20개 매장은 2024년에서는 진리국밥에서 명목 상 기재를 신규로 기재하였습니다.

6. [진리국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바로 전 3년간 [진리국밥]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78	ᄮᅕᄱᄅ	01 01 TI	정보공개서 어족		가당	냉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진리옥	20211522	한식	27/2	20/1	2/1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진리국밥	20221389	한식	-/-	8/-	24/1
가맹본부	㈜진리에프엔비	한돈제육대감	20211521	한식	20/20	15/1	9/1

- 위 기재 사항은 이전 가맹본부의 2024년도 자료 현황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2024년	가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
전체	24	314,519	24,194	693,126	85,799	64,303	3,215	22
서울	1	-	-	-	-	-	_	5곳미만
부산	_	_	_	_	-	_	_	_
대구	_	_	_	_	-	_	_	-
인천	_	_	_	_	-	_	_	-
광주	_	-	-	-	-	-	_	-
대전	5	297,720	33,080	429,662	65,998	136,060	15,118	5
울산	_	-	-	-	-	-	_	_
세종	2	-	-	-	-	-	_	5곳미만
경기	10	397,200	24,256	693,126	69,313	69,920	4,370	8
강원	2	_	-	_	-	-	_	5곳미만
충북	_	-	-	-	-	-	-	-
충남	_	_	-	_	-	-	_	-
전북	1	_	-	_	-	_	_	5곳미만
전남	3	-	-	_	-	-	-	5곳미만
경북	_	-	-	_	_	-	_	_
경남	_	-	-	_	-	_	_	-
제주	_	-	-	-	-	-	-	-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은 물류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27%) 기준으로, 물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1개점, 6개월 미만 운영 1개점을 제외하고, 제대로 매출액이 파악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22/24개점을 대상으로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물류공급 비율로 산정한 매출액의 기재는 실제 매출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운영매출액 = 물류매출액*100/27).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위 기재 사항은 이전 가맹본부의 2024년도 자료 현황을 기초로 산정한 것입니다.

8. [진리국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진리국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4	858일

⁻ 위 기재 사항은 이전 가맹본부의 자료현황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이전 가맹본부가 진리옥으로 기재한 2023년말이전 가맹점 20개점 모두를 실제 현실에 맞게 2024년부터는 진리국밥으로 전환(轉換)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영업일은 모두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최초계약일은 이전 가맹본부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습니



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진리국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01.02.사업자등록을 하여 2024년 이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Ь 국민은행	화성향남종합금융센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392 101호	031-8059-106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항 목	내 용
국 민 은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행 계 좌 가 있 는 사 업 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② (기업)클릭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 클릭 → ⑦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⑨ 가맹금예치 완료
7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 좌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개 설 시 필 요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서 류

*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 입니다. 인터 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 셔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진리국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 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	-	-	
가맹비	11,000	계약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비용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오픈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3,300	체결 시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2) 당사는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0			

보증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4,300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6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면적 33m²)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 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7,400	-	-	-	매장상황에 따라 변경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미지정)	5,500	-		당사의 귀책사유가	-
초도물품	가맹본부	1,900	-	가맹 계약 시 개별 계약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별도금액	자체시공 및 설치	인테리어,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POS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귀하의 매장에 대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상담→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가맹본부 동의→입지 확정

귀하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귀하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귀하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채용 기준	교육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진리국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3.3%	익월 10일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개별청구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V-8.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	기본교육은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수시교육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개별청구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본부: 변경비용의 25% 귀하: 변경비용의 75%	-	-	경영방침, 유행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점포환경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현강(천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20%	VII-1. 참고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진행 전/	VII-1. 참고
선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40%	VII 1. []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진행 후에는 반환 불가	74 1. 0 4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이율 15%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 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에게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가

맹비로 ₩5,500,000원(부가세포함) 및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교육비 ₩3,300,00 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가맹계약서 제34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된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 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가맹점사업자는 협력업체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 본부가 제공한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맹본부의 소유이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본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6. 가맹점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또는 유선상 가맹본부 또는 [진리국밥]을 나타내는 모든 컨텐츠, 사이트, 전화번호, 지역정보 등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진리국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진리국밥]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2024년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은 ㈜진리에프엔비는 2024.12.26.설립되고, 2025.01.0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4년이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진리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은 ㈜진리에프엔비는 2024.12.26.설립되고, 2025.01.0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4년이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당사가 [진리국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은 ㈜진리에 프엔비는 2024.12.26.설립되고, 2025.01.0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4년이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개별 공지에 따름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기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지정묘구, 정품증립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별첨2. 메뉴명 및 권장가격)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입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V-8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진리국밥 진리옥	해당 없음

^{*} 영업지역 보호제도는 당사가 [진리국밥]과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외**의 다른 영업표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영업표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계약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별지에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영업지역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표시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 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 의 → 영업지역 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 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 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H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7%	3%	-	-

*이전 가맹본부의 2024년말 기준이며, 진리옥 가맹점의 산정가능한 운영매출액과 진리옥 직영점 1개점의 운영매출액을 추정한 수치를 기초로 작성 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해당없음

^{*} 이전 가맹본부의 현황이며, 직영점과 비교하여 가맹점만의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진리국밥]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1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ᇬ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추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	3조	
로 변경하는 경우	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 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8조~9조, 16조~17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7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9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	22조	25조
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1항~4항	각 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2조 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3조 10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 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4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과 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27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하는 경우	30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 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	31조	
는 경우	3~4항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2조 각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8조 1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5조 21호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	2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 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3조 제1힝	제2호

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당사의 시정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게크 에서 서표	계약조문
당사가 제5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3조
당사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2항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33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항

라. 당사는 아래의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에게 는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가맹비로 ₩5,500,000원(부가세포함) 및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교육비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 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경영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민법 상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및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속인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기간에 한하여 가맹

금은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진리국밥]과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업금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진리국밥'과 취급 메뉴가 동일한 외식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진리국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30 ~ 23:00	주 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업일 7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고객이 휴업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필수 아님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절차는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일반방문→주문→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수시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품질 관리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진리국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교교사건	부담	비율	보다 저희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가맹점사업자수	실시 1개월 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가맹점사업자수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제시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
ᅲᄎᆌᆡ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판촉행사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가맹본부 사전 승인 필요)	-

^{*} 전국단위의 광고.판촉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판촉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사유[가맹계약서 제35조]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9조(경업금 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각각 금삼천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일(日)당 금십만원(\10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당 금이십만원(₩2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위 위약벌 조항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다음 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해지일 직전 12개월의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잔여개월수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가맹점사업자의 월 평균 매출액 기준
- *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로 계산하여 월매출액 산정
- ⑦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⑨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 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14일 이후 계약	IV.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가맹계약 체결 및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아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 리어 등의 노후화가객 관적으로 인 정타는 경우 이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기행사 업기 등의 적인 현저한 적인 현저한 지장을 주 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용 ○안테라어 공사 비용(장바집기의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와라는 일 체기 바용 단, 가맹사 함에 바용 가맹점 사업자가 공사를 사업자가 공사를 시험에 따라 요요되는 제외)	아점포의 확 장 이 전 한하지 보고 20% 이 수반하지 보고 20% 이 전 하는 된 20% 이 수 전 후 보고 20% 이 수 전 후 보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환화자) 이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밖) → 3차에 걸쳐기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 내에 기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계약이 종 료계약의 해자 양압당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 아니하거나 이 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 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가맹점 운영과 관련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	가맹본부

요청 시	된 경영지도	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안내→개선사항 시정	부담 (단, 개선에 소요 되는 비용은 가맹 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지원활동을 할 경우 별도로 고지 및 변경사항을 등록하겠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진리국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매뉴얼 교육 운영교육,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경영상의 필요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 협의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진리국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	요청시 실시
재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진리에프엔비는 2024.12.26.설립되고, 2025.01.0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4년이전 직영점 현황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① 법인사업자 재무현황

당사는 2024.12.설립법인하고, 2025.01.02. 사업자등록하여 2024년 이전 재무현황이 없습니다.

② 개인사업자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메뉴명 및 권장가격

(2025.04.20.기준)

번호	메뉴명	권장가격(원)
1	돼지국밥	10,000
2	내장국밥	10,000
3	순대국밥	11,000
4	순대만국밥	11,000
5	뽈살코기국밥	12,000
6	모듬국밥	12,000
7	얼큰이 변경시	1,000
8	머릿고기 추가시	1,500
9	곱창 추가시	1,500
10	순대 추가시	1,500
11	뽈살 추가시	2,500
12	장터국밥	12,000
13	소내장탕	12,000
14	나주곰 탕	12,000
15	차돌육개장	11,000
16	버섯 차돌육개장	12,000
17	왕만두 차돌육개장	13,000
18	모듬 만두국	11,000
19	사골떡만두국	10,000
20	물냉면	10,000
21	매운 물냉면	10,000
22	비빔냉면	10,000
23	매운비빔냉면	10,000
24	명태회냉면	12,000
25	곱빼기 변경	2,000
26	철판함박스테이크	9,000
27	등심돈까스	5,000
28	연탄불고기	9,000
29	매운연탄불고기	10,000
30	함박스테이크	4,000
31	뽈살수육 200g + 명태회	14,000
32	삼겹수육 200g + 명태회	16,000
33	전통편육 200g	10,000
34	갈비만두(5입)	5,000
35	고기왕만두(4입)	6,000
36	김치왕만두(4입)	6,000
37	순대볶음	15,000
38	수제떡갈비	10,000
39	매콤제육	9,000

40	간장제육	9,000
41	제육한상세트	12,000
42	매콤제육덮밥	9,000
43	간장제육덮밥	9,000
44	스팸마요덮밥	9,000
45	연탄불고기덮밥	9,000

별첨3. 구입강제품목

2024년 12월03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가맹계약서 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T 6억간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	는 인)	전화번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	서/인근	가맹점현횡	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확인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	성해주세.	요.	
T 0 7 L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접*	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사 대 (대 ㅠ 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변	1 ō	
	1 = (11 =)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 0 – .	00(91111/1)				
	주소(사무소)		전화빈	선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u> </u>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 법 시호	행령 제 5 조
		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	_		
			ㅁ · ·· 년	월	일
		ام ا جَاما		/	
-11 -1 -1 -1	al =1	신청인		(서병 년	또는 인)
예치기관	의 장			71.	- 1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